

보충질문답변서

(재무과)

질문의원

남재정의원 (운영위원회위원장: 부암동)

【질문】

- 명륜2가 118-1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 효제동 73-7의 매각은 공유재산심의회 미상정한 사유
- 원남동 95-13은 시유지임에도 매각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한 사유

【답변】

- 우리구 명륜2가 118-1(대, 7.9㎡)의 매각은 2003.7.23 매수 신청되어 2003. 9. 16.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후 감정 평가를 하였으나,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매수를 포기하였고, 2004년 7월 재차 매수 신청하여 또다시 토지감정을 한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 평균가액 44,832천원에 매각하였으며,
- 효제동 73-7(대, 22.5㎡)은 2005. 5. 6. 매수 신청되어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고 2005. 7. 7. 감정가액 55,237천원에 매각한 사유는 2004년도 상반기까지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11항 제2호에 의거 대지 최소분할 면적(90㎡)에 미달하고, 제3호에 의거 대장가액(공시지가)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심의를 생략하였으나, 행정자치부에 질의 한바, 위 조례 중 각 1호에만 해당되어도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어 2004년도 10월부터 위 조례 중 각 1호에만 해당되어도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고 매각 하였음. 따라서 2005. 7. 7. 매각한 효제동 73-7은 대지 최소 분할 면적 (90㎡)에 미달하여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.
- 원남동 95-13(대, 21.6㎡)의 매각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이유에 대하여는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국공유지 매각자료를 요구하여 작성하던 중 2002.5.30. 매각한 구유지를 착오로 시유지 매각 현황자료에 포함하여 의원님께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